

목 차

참 고 서 류	1
I. 권유자·대리인·피권유자에 관한 사항	2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2
2. 대리인에 관한 사항	2
3. 피권유자의 범위	2
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2
5. 기타 사항	3
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3
□ 재무제표의 승인	3
□ 정관의 변경	57
□ 이사의 선임	58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59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60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귀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1항에 의거하여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제출합니다.

제 출 일: 2016년 2월 25일

성 명: 삼성증권 주식회사

권 유 자: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전화번호: 02-2020-8000

I. 권유자 · 대리인 · 피권유자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2015년 12월 31일 현재)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본인	자사주 6,329,040주 (8.28%)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015년 12월 31일 현재)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삼성생명	최대주주	보통주	8,542,111주	12.18%	최대주주	-
삼성화재	계열회사	보통주	6,132,246주	8.75%	계열회사	-
삼성문화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195,992주	0.28%	특수관계인	-
전삼현	등기임원	보통주	200주	0.00%	등기임원	-
계			14,870,549주	21.21%		

註1) 주식 소유 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수(70,106,125주 = 발행주식총수 76,435,165주 - 자사주 6,329,040주) 대비 비율

2. 대리인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비고
김현철(삼성증권)	-	-	직원	-
박근봉(삼성증권)	보통주	200주	직원	-
조재석(삼성증권)	-	-	직원	-

3. 피권유자의 범위

2015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보통주 보유 주주

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34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5. 기타 사항

가. 위임권유기간 : (시작일) - 2016년 3월 2일

(종료일) - 2016년 3월 11일 제34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나. 위임장용지의 교부방법

- 권유자 또는 대리인이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
-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하는 방법(권유자가 발행인인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www.samsungpop.com
홈페이지의 관리기관	삼성증권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시 안내여부	공고시 안내

다.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년 3월 11일 오전 9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

라.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 (성명) - 김현철

(부서 및 직위) - 총무팀 차장

(연락처) - 02-2020-7013

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영업개황

삼성증권은 2015년 12월말 연결 기준 총자산 30조 9,944억원, 자기자본 3조 5,238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2,279명(현지채용인 제외), 국내 자회사 1개와 해외거점 5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우수한 인프라와 인적 자원에 바탕을 둔 탁월한 경쟁력은 국내외 투자가들로부터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안정적인 고품질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급변하는 경제 및 금융환경과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한경쟁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최고의 자산관리 명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지분증권 수탁수수료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5.1.1~'15.9.30	'14.1.1~'14.12.31	'13.1.1~'13.12.31	'12.1.1~'12.12.31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당사	320,851	8.94%	276,295	8.22%	267,428	7.55%	316,545	7.84%
NH투자증권	295,816	8.25%	222,366	6.61%	233,195	6.59%	275,102	6.82%
대우증권	279,015	7.78%	230,534	6.86%	233,333	6.59%	273,877	6.79%
현대증권	247,585	6.90%	210,008	6.25%	214,779	6.07%	258,269	6.40%
한국투자증권	235,871	6.57%	232,911	6.93%	241,071	6.81%	267,431	6.63%
신한금융투자	231,341	6.45%	207,092	6.16%	207,562	5.86%	223,993	5.55%

* 상기 자료는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 '09.4월이후 시스템 변경에 따라 지분증권 위탁매매 수수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 기타 추가사항은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 내 III. 경영참고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현금흐름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4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33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34 기	제 33 기
자산총계	30,994,440,993,756	25,774,747,150,771
I.현금및현금성자산	576,672,161,458	437,011,307,186
II.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0,370,141,611,171	17,601,152,757,681
III.매도가능금융자산	3,301,583,689,987	2,428,077,304,412
IV.대여금및수취채권	6,528,507,575,540	5,107,299,697,587
V.관계기업투자지분	12,375,919,703	12,922,944,407
VI.유형자산	57,622,618,284	58,231,608,356
VII.무형자산	100,553,097,431	114,679,201,384
VIII.당기법인세자산	35,785,937,971	77,449,707
IX.이연법인세자산	48,745,824	63,204,000
X.기타자산	11,149,636,387	15,231,676,051
부채총계	27,470,619,693,073	22,347,902,301,327
I.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9,218,886,570,971	8,041,626,495,524
II.예수부채	4,522,284,159,999	3,550,409,235,928
III.차입부채	11,568,631,020,330	9,498,300,055,107
IV.발행사채	498,896,269,039	-
V.순확정급여부채	7,302,949,997	3,583,511,951
VI.충당부채	8,037,767,620	6,574,071,450
VII.당기법인세부채	2,607,236,149	67,866,716,199
VIII.이연법인세부채	71,504,011,640	50,404,911,016

IX.기타부채	1,572,469,707,328	1,129,137,304,152
자본총계	3,523,821,300,683	3,426,844,849,444
I.자본금	394,153,905,000	394,153,905,000
II.자본잉여금	1,508,204,971,519	1,508,197,332,569
III.자본조정	(329,522,487,504)	(204,662,792,095)
IV.기타포괄손익누계액	165,676,060,287	171,431,152,100
V.이익잉여금	1,785,308,851,381	1,557,650,850,814
VI.비지배주주지분	-	74,401,056
부채와 자본총계	30,994,440,993,756	25,774,747,150,771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 34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33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4 기	제 33 기
I. 순수수료손익	540,118,615,971	416,423,711,340
1. 수수료수익	636,647,738,024	485,369,935,056
2. 수수료비용	96,529,122,053	68,946,223,716
II. 순이자손익	421,008,038,889	339,452,124,663
1. 이자수익	627,692,379,967	553,921,923,554
2. 이자비용	206,684,341,078	214,469,798,891
III.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순손익	(67,116,121,899)	(26,059,185,354)
1. 매매목적금융상품관련이익	534,004,147,226	501,078,517,872
2.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	1,293,448,247,076	1,021,124,208,862
3.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관련이익	541,715,999,567	421,000,205,717
4. 매매목적금융상품관련손실	411,089,228,110	332,150,358,101
5.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	1,522,876,234,278	1,131,828,818,182
6.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관련손실	502,319,053,380	505,282,941,522
IV. 기타영업손익	101,856,858,487	38,696,745,126
1. 기타영업수익	306,993,927,565	119,643,754,382
2. 기타영업비용	205,137,069,078	80,947,009,256
V. 순영업손익	995,867,391,448	768,513,395,775
VI. 인건비	334,813,126,658	332,254,610,261
VII. 판매비와관리비	284,394,371,135	269,276,339,846
VIII. 영업이익	376,659,893,655	166,982,445,668
IX. 영업외수익	3,182,639,815	6,355,177,461
X. 영업외비용	14,969,807,083	10,681,498,193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64,872,726,387	162,656,124,936
XII. 법인세비용	89,827,866,644	36,665,462,482
XIII. 계속영업이익	275,044,859,743	125,990,662,454
XIV. 중단영업이익	-	110,609,787,542
XIII. 당기순이익	275,044,859,743	236,600,449,996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	275,041,781,817	229,462,574,425
2. 비지배지분순이익	3,077,926	7,137,875,571
XIV. 기타포괄손익	(5,758,031,414)	4,523,584,130
XV. 당기총포괄이익	269,286,828,329	241,124,034,126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총포괄이익	269,286,690,004	237,156,502,008
2. 비지배지분총포괄이익	138,325	3,967,532,118

<연결자본변동표>

제 34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33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		
2014.1.1(당기초)	394,153,905,000	1,507,956,488,589	(105,670,637,740)	162,327,815,150	1,337,038,884,456	141,346,194,006	3,437,152,649,461
연차배당	-	-	-	-	(7,441,198,700)	(8,329,951,000)	(15,771,149,700)
당기순이익	-	-	-	-	229,462,574,425	7,137,875,571	236,600,449,99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2,660,801,239)	-	385,191,153	(2,275,610,086)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6,275,977,191	-	(3,508,445,176)	2,767,532,015
해외사업환산손익	-	-	-	4,078,751,631	-	(47,089,430)	4,031,662,201
자기주식의 취득	-	-	(76,953,758,630)	-	-	-	(76,953,758,630)
자기주식의 처분	-	132,538,276	374,870,751	-	-	-	507,409,027
주식선택권 소멸 등	-	108,305,704	(267,931,322)	-	-	-	(159,625,618)
종속기업 지분의 추가 취득	-	-	(22,145,335,154)	-	-	(63,304,066,531)	(85,449,401,685)
종속기업 지분의 처분	-	-	-	-	-	(73,605,307,537)	(73,605,307,537)
재측정요소의 대체	-	-	-	1,409,409,367	(1,409,409,367)	-	-
2014.12.31(당기말)	394,153,905,000	1,508,197,332,569	(204,662,792,095)	171,431,152,100	1,557,650,850,814	74,401,056	3,426,844,849,444
2015.1.1(당기초)	394,153,905,000	1,508,197,332,569	(204,662,792,095)	171,431,152,100	1,557,650,850,814	74,401,056	3,426,844,849,444
연차배당	-	-	-	-	(47,383,781,250)	-	(47,383,781,250)
당기순이익	-	-	-	-	275,041,781,817	3,077,926	275,044,859,74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2,166,155,036	-	636,470	2,166,791,506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14,358,356,117)	-	(3,576,071)	(14,361,932,188)
해외사업환산손익	-	-	-	6,437,109,268	-	-	6,437,109,268
자기주식의 취득	-	-	(124,830,527,840)	-	-	-	(124,830,527,840)
주식선택권의 소멸 등	-	7,638,950	(7,638,950)	-	-	-	-
종속기업 지분의 추가취득	-	-	(21,528,619)	-	-	(74,539,381)	(96,068,000)

2015.12.31(당기말)	394,153,905,000	1,508,204,971,519	(329,522,487,504)	165,676,060,287	1,785,308,851,381	-	3,523,821,300.68
							3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34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33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4 기		제 33 기	
I.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1,417,245,006,693)		(1,517,180,900,334)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701,102,352,917)		(1,815,313,121,333)	
(1) 당기순이익	275,044,859,743		236,600,449,996	
(2) 손익조정사항	(668,766,658,467)		(490,068,344,697)	
(3) 자산·부채의 증감	(1,307,380,554,193)		(1,561,845,226,632)	
2. 이자의 수취	616,560,159,195		542,031,479,370	
3. 이자의 지급	(197,066,319,441)		(236,427,319,110)	
4. 배당금의 수취	30,116,295,575		24,273,269,483	
5. 법인세의 납부	(165,752,789,105)		(31,745,208,744)	
II. 투자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839,734,479,085)		(294,969,951,055)
(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2,341,386,681,818		1,625,423,839,155	
(2)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	20,285,975,381		39,208,117,807	
(3) 관계기업투자지분의 처분	-		6,499,641,197	
(4) 종속기업 처분 순현금유입	-		266,713,233,667	
(5) 유형자산의 처분	77,203,941		171,258,726	
(6) 무형자산의 처분	1,690,000,000		2,278,509,445	
(7)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3,164,872,737,157)		(2,152,678,652,652)	
(8)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8,312,409,884)		(21,315,486,601)	
(9) 유형자산의 취득	(16,977,843,735)		(21,616,179,316)	
(10) 무형자산의 취득	(13,011,349,449)		(24,428,677,846)	
(11) 종속기업 처분 순현금유출	-		(15,225,554,637)	
III. 재무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2,393,282,711,212		2,027,073,176,338
(1) 차입부채의 순증감	2,066,907,188,301		2,504,936,054,489	
(2) 발행사채의 발행	498,685,900,000		-	
(3) 발행사채의 상환	-		(300,000,000,000)	
(4) 주식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자기주식의 처분	-		311,431,864	
(5) 자기주식의 취득	(124,830,527,840)		(76,953,758,630)	
(6) 배당금의 지급	(47,383,781,249)		(15,771,149,700)	
(7)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추가취득	(96,068,000)		(85,449,401,685)	
IV.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3,357,628,838		996,989,684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Ⅰ+Ⅱ+Ⅲ+Ⅳ)		139,660,854,272		215,919,314,633
VI.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437,011,307,186		221,091,992,553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576,672,161,458		437,011,307,186

<별 도 재 무 상 태 표>

제 34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33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34 기	제 33 기
자산총계	29,922,734,148,480	25,037,280,992,283
I.현금및현금성자산	528,497,424,689	403,581,156,955
II.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0,277,984,925,482	17,382,223,364,128
III.매도가능금융자산	3,227,196,616,462	2,375,110,185,594
IV.대여금및수취채권	5,268,523,693,187	4,221,434,092,582
V.중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지분	421,299,837,996	476,365,567,640
VI.유형자산	55,951,719,444	55,800,723,875
VII.무형자산	97,410,732,925	111,223,837,178
VIII.당기법인세자산	35,622,602,191	-
IX.기타자산	10,246,596,104	11,542,064,331
부채총계	26,418,944,313,005	21,605,522,650,122
I.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9,206,826,791,593	8,034,390,784,584
II.예수부채	3,470,465,760,064	2,799,773,113,645
III.차입부채	11,613,753,020,330	9,540,619,255,107
IV.발행사채	498,896,269,039	-
V.순확정급여부채	7,143,891,078	3,577,962,522
VI.충당부채	8,037,767,620	6,574,071,450
VII.당기법인세부채	-	67,316,721,085
VIII.이연법인세부채	70,483,100,704	49,512,435,090
IX.기타부채	1,543,337,712,577	1,103,758,306,639
자본총계	3,503,789,835,475	3,431,758,342,161
I.자본금	394,153,905,000	394,153,905,000
II.자본잉여금	1,508,211,620,258	1,508,203,981,308
III.자본조정	(307,355,623,731)	(182,517,456,941)
IV.기타포괄손익누계액	157,201,468,930	170,532,200,905
V.이익잉여금	1,751,578,465,018	1,541,385,711,889
부채와 자본총계	29,922,734,148,480	25,037,280,992,283

<별도포괄손익계산서>

제 34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33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4 기	제 33 기
-----	--------	--------

I. 순수수료손익	500,455,105,876	380,700,060,636
1. 수수료수익	594,040,803,833	447,836,806,914
2. 수수료비용	93,585,697,957	67,136,746,278
II. 순이자손익	394,164,506,294	320,683,161,195
1. 이자수익	596,968,443,917	531,131,732,228
2. 이자비용	202,803,937,623	210,448,571,033
III.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순손익	(56,327,034,334)	(29,403,974,968)
1. 매매목적금융상품관련이익	536,616,369,810	489,904,200,701
2.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	1,292,545,625,229	1,020,711,469,275
3.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관련이익	540,423,490,727	421,000,205,717
4. 매매목적금융상품관련손실	406,440,189,134	331,807,402,126
5.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	1,517,153,277,586	1,123,929,507,013
6.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관련손실	502,319,053,380	505,282,941,522
IV. 기타영업손익	115,442,579,446	53,146,454,392
1. 기타영업수익	319,550,928,480	131,902,794,214
2. 기타영업비용	204,108,349,034	78,756,339,822
V. 순영업손익	953,735,157,282	725,125,701,255
VI. 인건비	315,343,563,289	312,834,758,412
VII. 일반판매비와관리비	267,226,856,707	251,832,936,399
VIII. 영업이익	371,164,737,286	160,458,006,444
IX. 영업외수익	4,073,482,920	174,637,529,787
X. 영업외비용	31,464,967,025	10,563,420,799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43,773,253,181	324,532,115,432
XII. 법인세비용	86,196,718,802	81,009,759,869
XIII. 당기순이익	257,576,534,379	243,522,355,563
XIV. 기타포괄손익	(13,330,731,975)	(369,182,687)
XV. 총포괄손익	244,245,802,404	243,153,172,876

<별도 자본 변동표>

제 34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33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	총 계
2014.1.1	394,153,905,000	1,507,963,137,328	(105,670,637,740)	170,901,383,592	1,305,304,555,026	3,272,652,343,206
연차배당	-	-	-	-	(7,441,198,700)	(7,441,198,700)
당기순이익	-	-	-	-	243,522,355,563	243,522,355,563
기타포괄손익	-	-	-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837,055,881)	-	(1,837,055,88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1,967,498,790	-	1,967,498,790
종속기업투자지분평가손익	-	-	-	(219,534,948)	-	(219,534,948)
관계기업투자지분평가손익	-	-	-	(377,017,869)	-	(377,017,869)
해외사업환산손익	-	-	-	96,927,221	-	96,927,221
자기주식의 취득	-	-	(76,953,758,630)	-	-	(76,953,758,630)
자기주식의 처분	-	132,538,276	374,870,751	-	-	507,409,027
주식선택권 소멸 등	-	108,305,704	(267,931,322)	-	-	(159,625,618)
2014.12.31	394,153,905,000	1,508,203,981,308	(182,517,456,941)	170,532,200,905	1,541,385,711,889	3,431,758,342,161
2015.1.1	394,153,905,000	1,508,203,981,308	(182,517,456,941)	170,532,200,905	1,541,385,711,889	3,431,758,342,161
연차배당	-	-	-	-	(47,383,781,250)	(47,383,781,250)
당기순이익	-	-	-	-	257,576,534,379	257,576,534,379
기타포괄손익	-	-	-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927,069,297	-	1,927,069,297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15,007,204,350)	-	(15,007,204,350)
종속기업투자지분평가손익	-	-	-	(250,596,922)	-	(250,596,922)
자기주식의 취득	-	-	(124,830,527,840)	-	-	(124,830,527,840)
주식선택권 소멸 등	-	7,638,950	(7,638,950)	-	-	-
2015.12.31	394,153,905,000	1,508,211,620,258	(307,355,623,731)	157,201,468,930	1,751,578,465,018	3,503,789,835,475

<별도 현금흐름표>

제 34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33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4 기		제 33 기	
I.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1,490,538,493,676)		(1,316,409,089,817)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767,520,730,695)		(1,624,033,407,779)	
(1) 당기순이익	257,576,534,379		243,522,355,563	
(2) 손익조정사항	(655,607,273,260)		(524,215,702,841)	
(3) 자산·부채의 증감	(1,369,489,991,814)		(1,343,340,060,501)	
2. 이자의 수취	590,048,424,644		522,355,512,837	
3. 이자의 지급	(192,633,113,141)		(230,230,173,048)	
4. 배당금의 수취	43,476,316,312		38,301,959,905	
5. 법인세의 납부	(163,909,390,796)		(22,802,981,732)	
II. 투자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781,391,476,142)		(572,355,687,671)
(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2,340,336,509,470		1,604,686,066,807	
(2)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	20,285,975,381		37,860,289,351	
(3)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처분	51,924,655,599		279,046,441,256	
(4) 유형자산의 처분	54,334,050		92,367,818	

(5) 무형자산의 처분	1,690,000,000		1,759,195,445	
(6)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3,144,614,426,663)		(2,140,895,301,134)	
(7)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8,312,409,884)		(19,577,166,601)	
(8)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취득	(13,533,447,315)		(291,381,061,341)	
(9) 유형자산의 취득	(16,471,903,331)		(19,962,446,081)	
(10) 무형자산의 취득	(12,750,763,449)		(23,984,073,191)	
III. 재무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2,396,181,579,211		2,122,542,679,023
(1) 차입부채의 순증감	2,069,709,988,301		2,506,626,204,489	
(2) 발행사채의 발행	498,685,900,000		-	
(3) 발행사채의 상환	-		(300,000,000,000)	
(4) 주식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자기주식의 처분	-		311,431,864	
(5) 자기주식의 취득	(124,830,527,840)		(76,953,758,630)	
(6) 배당금의 지급	(47,383,781,250)		(7,441,198,700)	
IV.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 효과		664,658,341		(448,647,344)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I+II+III+IV)		124,916,267,734		233,329,254,191
VI.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403,581,156,955		170,251,902,764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528,497,424,689		403,581,156,95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34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33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4 기		제 33 기	
I. 처분전 이익잉여금		257,576,534,379		243,522,355,563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	
2. 당기순이익	257,576,534,379		243,522,355,563	
II.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합 계		257,576,534,379		243,522,355,563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257,576,534,379		243,522,355,563
1. 이익준비금	7,010,612,500		4,738,378,125	
2. 대손준비금	1,685,463,810		736,717,127	
3. 임의적립금	178,774,333,069		190,663,479,061	
4. 배당금	70,106,125,000		47,383,781,250	
가. 현금배당	70,106,125,000		47,383,781,250	

보통주배당금(율):	1,000원(20%)		650원(13%)	
IV.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34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33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삼성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 기업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삼성증권 주식회사 (이하 '지배기업')는 단기금융업법에 따라 1982년 10월 19일에 단자회사로 설립되어 1988년 3월 9일 기업공개를 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1991년 7월 1일 유가증권의 매매·중개·대리·인수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증권업으로 전환하였으며, 1992년 11월 2일에 주식양수도에 따라 삼성그룹으로 편입되어 상호를 국제증권 주식회사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0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의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3,942억원이며, 최대주주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며, 지분율은 11.14%입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은 본점 외에 69개의 국내지점, 4개의 국내영업소, 2개의 해외사무소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의 개요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소재지	주요사업	결산일	연결실체 내 기업이 소유한 지분율 및 의결권비율(%)		비지배지분이 소유한 소유지분율(%) (주1)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Samsung Securities (America) Inc.	미국	증권중개	12월 31일	100.00	100.00	-	-
Samsung Securities (Europe) Ltd.	영국	증권중개	12월 31일	100.00	100.00	-	-
Samsung Securities (Asia) Ltd.	홍콩	증권중개	12월 31일	100.00	100.00	-	-
삼성선물㈜(주2)	한국	선물중개	12월 31일	100.00	99.95	-	0.05
한바구니CH장기공사채B-7호펀드	한국	투자	10월 22일	100.00	100.00	-	-
KTB중국본토포커스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주3)	한국	투자	4월 9일	100.00	100.00	-	-
KTB중국본토포커스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주3)	한국	투자	5월 15일	100.00	100.00	-	-
신한금융투자 특정금전신탁(주4)	한국	투자	-	-	100.00	-	-
기타 특정금전신탁(주4)	한국	투자	-	100.00	100.00	-	-
삼성선물㈜ 보유 특정금전신탁(주4)	한국	투자	-	100.00	-	-	-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종속기업의 (주1) 100%지분에서 연결실체 내 기업(또는 기업들)이 해당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단순합산한 지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지분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2) 지배기업은 당기 및 전기 중 사업기반 확대에 따른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종속기업인 삼성선물㈜의 지분을 삼성생명보험㈜ 등으로부터 추가 매입하여 지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주3) 사모단독펀드로서 관련 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에 노출되는 정도 및 연결실체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실체가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4) 특정금전신탁으로서 관련 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에 노출되는 정도 및 연결실체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실체가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신한금융투자 특정금전신탁은 당기 중 처분되었습니다.

2) 당기 중 신규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사유
기타 특정금전신탁	신규 투자
삼성선물㈜ 보유 특정금전신탁	신규 투자

3) 당기 중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사유
신한금융투자 특정금전신탁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기타 특정금전신탁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4)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총계	부채총계	순영업손익	순이익	총포괄손익
Samsung Securities (America) Inc.	37,509,591	1,367,042	5,867,894	372,498	2,606,900
Samsung Securities (Europe) Ltd.	32,856,799	940,222	3,131,783	443,137	2,413,023
Samsung Securities (Asia) Ltd.	36,745,521	1,268,033	5,212,936	(53,108)	2,179,713
삼성선물(주2)	1,778,229,237	1,624,386,995	38,865,635	11,708,152	12,502,845
한바구니CH장기공사채B-7호펀드	3,157,329	181	114,909	112,493	453,391
KTB중국본토포커스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119,723,114	6,829,465	1,482,324	1,482,324	1,482,324
KTB중국본토포커스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59,904,913	4,371,189	716,580	716,580	716,580
기타 특정금전신탁	1,014,076,827	6,239,533	3,075,329	2,837,295	2,837,295

(주1) 상기 요약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는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다만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주2)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기준의 재무정보입니다.

5) 당기 중 비지배지분이 연결실체에 중요한 종속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배당금액 중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몫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 귀속 당기순손익	비지배지분 귀속 당기총포괄손익	비지배지분에게 지급된 배당금
삼성선물(주)	-	3,078	138	-

6) 당기 중 각 종속기업의 요약 현금흐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현금및현금성자산 의 환율변동 효과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Samsung Securities (America) Inc.	650,419	(11,931)	-	812,692	11,925,599	13,376,779
Samsung Securities (Europe) Ltd.	(3,425,121)	(4,834)	-	466,404	8,896,401	5,932,850
Samsung Securities (Asia) Ltd.	12,254,859	(4,405)	-	1,449,224	15,018,743	28,718,421
삼성선물(주2)	20,876,566	(20,980,797)	-	-	205,806	101,575
한바구니CH장기공사채B-7호펀드	116,503	1,050,172	(1,165,799)	-	684	1,560
KTB중국본토포커스 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229,133)	-	-	(19,581)	333,133	84,419
KTB중국본토포커스 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195,325)	-	-	(15,769)	271,308	60,214
신한금융투자 특정금전신탁	50,758,856	-	(50,758,856)	-	-	-
기타 특정금전신탁	(694,705,888)	-	694,410,170	-	295,718	-

(주1) 상기 요약 현금흐름은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다만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주2)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기준의 재무정보입니다.

한편, 전기 중 종속기업의 처분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삼성H클럽도탈리턴 전문사모투자신탁 제1호	삼성자산운용(주)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수취한 대가(A)	-	271,393,710
현금및현금성자산 처분액(B)	15,225,555	4,680,476
종속기업 처분 순현금유입(유출)(A-B)	(15,225,555)	266,713,234

7) 당기 중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율이 증가한 거래의 내역과 그로 인해 지배기업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단위: 천원)

구 분	삼성선물(주)
변동 전 지분율	99.95%
변동 후 지분율	100.00%
지분취득대가(A)	96,068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지분 해당액(B)	(2,966)
비지배지분의 변동(C)	77,505
기타불입자본의 변동(A-B-C)	21,529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근무연수의 경과와 무관한 기여금을 근무기간에 배분하지 않고 근무용역이 제공되는기간에 근무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0-2012 cycl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하여 '가득조건'과 '시장조건'의 정의를 개정하고 '성과조건'과 '용역제공조건'의 정의를 추가하는 개정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규정하는 조건부대가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한 개정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서 규정하는 부문자산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보고부문의 총자산에서 기업전체의 자산으로의 조정을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1-2013 cycl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적용범위에 '공동약정 자체의 재무제표에서 공동약정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는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등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이 존재하며,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중요성과 통합표시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재무제표에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을 구체화하고 주식공시 순서 및 지분법적용자산 관련 기타 포괄손익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이 적절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무형자산이 수익의 측정치로 표현되거나 소비와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 소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면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은 반증할 수 없는 한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41호 농림어업(개정)

동 개정사항은 생산용 식물을 유형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개정)

동 개정사항은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할 때,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관계기업 등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한 회계처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공동영업의 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하는 사업을 구성하고, 공동영업자가 해당 공동영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사업이 공동영업에 출자되어 공동영업이 설립되면서 해당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와 다른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결합 회계처리와 관련된 원칙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것과 해당 기준서들이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동 기준서에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나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그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동 기준서는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이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얻게 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나타나도록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원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단계- 1) 고객과의 계약 식별, 2) 수행의무 식별, 3) 거래가격 산정, 4)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5)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인식-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제1018호 '수익',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를 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2-2014 cycl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과 관련하여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매각예정에서 분배예정으로 또는 반대로 재분류될 때 이는 처분이나 분배 계획의 변경이 아니므로 계획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이 존재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16년 2월 11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16년 3월 11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 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 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기업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이나 기업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이후 보고일에 재측정하고 적절한 경우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관계기업투자와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공동영업에 대한 투자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으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실체가 공동영업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자로서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합니다.

-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결실체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자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6)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관계기업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2.(4)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7) 리스

연결실체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정액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연결채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에 따라 당해 적격 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화(KRW)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위험회피회계정책에 대해서는 주석 2.(21) 참고)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화(KRW)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주식기준보상약정

종업원과 유사용역제공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부여일에 결정되는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는 가득될 지분상품에 대한 연결실체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가득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화됩니다. 각 보고기간 말에 연결실체는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추정에 대한 수정치의 효과는 누적비용이 수정치를 반영하도록 잔여 가득기간 동안에 걸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기타불입자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기준보상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채를 최초로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결제되기 전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시점에 부채의 공정가치는 재측정되고 공정가치변동액은 해당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물	20~40년
차량운반구 및 비품	2~5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아래에 제시된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개발비	5년
소프트웨어	5년
기타무형자산	5년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연결실체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환매조건부채권

연결실체는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채권매도가격을 환매조건부매도의 과목으로 하여 차입부채로 표시하고, 환매수하는 경우에 환매수가액과 매도가액의 차액을 순이자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매조건부매수의 과목으로 하여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표시하고, 환매도하는 경우에 환매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순이자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공동기금

연결실체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9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2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장내매매거래)에 따른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각각 기본적립금 10억 외에 변동적립금으로 직전 분기 말 이전 1년간 증권시장에서의 일평균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연결실체의 일평균 주식매매대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증거금에 대한 연결실체의 일평균 거래증거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한국증권예탁결제원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15조에 따라 기본적립금 1천만원과 한국증권예탁결제원의 직전 3개월 결제대금 합계액 중 연결실체의 결제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변동적립금을 한국증권예탁원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CCP)에서 결제되는 장외파생상품의 채무불이행으로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23조의 14 및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청산업무규정 26조에 따라 기본적립금 1억원과 매월 이전 1년간 일평균 순위험청산증거금 중 연결실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변동적립금을 장외파생공동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상기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 의무(법적 의무 또는 의제 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7) 수익인식

1) 수수료 수익

연결실체는 각종 위탁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등을 매매계약체결일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용역수수료를 그 수수료의 부과목적과 관련하여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합니다.
-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는 관련 용역이 제공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는 유의적인 행위를 완료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매매목적보유 또는 당기손익인식지정 금융자산(부채)를 제외한 모든 이자포함 금융자산(부채)의 이자수익(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이자수익", "이자비용"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3) 매매손익

매매손익은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와 관련된 이익과 손실로 이루어지며,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손익, 처분손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거래일손익(Day 1 profit and loss)

연결실체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과의 차이(Day 1 profit and loss)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차이는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합니다.

(18)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 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がい거나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영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니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자산이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연결실체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대여금및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개별적으로 중요한 금융자산의 경우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연결실체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20)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부채 · 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가지분상품을 채취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가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연결실체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가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 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8)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는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합성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세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3) 공정가치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현금흐름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금흐름 위험회피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재분류된 금액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되는 경우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5)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

연결실체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외화환산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외화환산적립금에 누계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해외사업장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2)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23) 신탁계정

연결실체는 신탁재산을 연결실체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신탁계정으로부터 신탁재산의 운용,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는 경우 순수수료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연결실체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연결실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다만 매각으로 인하여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 매각시점에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매각한 이후에도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잔여 보유분에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결실체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식사항은 2016년 3월 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조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9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제29조(이사의 선임) ① _____, __,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_____.	지배구조법 제17조① 반영
제32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신설)	제32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__회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로 이사 _____. ③ 이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주요 업무집행책임자를 임명한다.	지배구조법 제17조① 반영 지배구조법 제8조① 반영

<p>제34조(이사회)</p> <p>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p> <p>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p>	<p>제34조(이사회)</p> <p>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재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 임원 등과의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감독에 관한 사항 8.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에서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p>② _____ 결의를 거쳐 매년 사외이사중에서 선임한다.</p>	<p>지배구조법 제15조① 반영</p>
<p>제34조의2(위원회)</p> <p>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보상위원회 5. 리스크관리위원회 6. 내부거래위원회 7.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p>제34조의2(위원회)</p> <p>①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_____ 2. _____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4. 보수위원회(보상위원회) 5. 위험관리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6. _____ 7. _____ 	<p>지배구조법 제16조① 반영</p>
<p>제34조의5(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p> <p>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34조의2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p>	<p>제34조의5(임원후보추천위원회)</p> <p>① _____</p> <p>임원후보추천위원회 _____.</p> <p>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 _____.</p>	<p>지배구조법 제16조① 반영</p>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성진	1949-04-18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문경태	1953-03-26	사외이사	없음	

전영목	1964-10-20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성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초빙교수	- '00. 기획예산처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 - '03. 대통령비서실 정책수석실 비서관 - '04. 중소기업청 청장 - '06. 해양수산부 장관 - '07.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09. 한경대 총장	해당사항 없음
문경태	법무법인 세종 고문	- '01.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국장 - '02.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실장 - '05.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실장 - '06. 한국제약협회 상근부회장 - '07. 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	해당사항 없음
전영목	삼성증권 경영지원실장	- '86. 삼성생명 입사 - '07. 삼성생명 재무심사팀장 - '09. 삼성생명 투자사업부장 - '11. 삼성생명 자산PF운영팀장 - '14. 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장 - '15. 삼성증권 경영지원실장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성진	1949-04-18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김성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초빙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 기획예산처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 - '03. 대통령비서실 정책수석실 비서관 - '04. 중소기업청 청장 - '06. 해양수산부 장관 - '07.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09. 한경대 총장 	해당사항 없음
-----	-----------------------	---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7(4)	7(4)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15억	115억